

의안번호	2201110
의 퇴 인	구자근의원
회 답 일	2024.08.23.
추 계 번호	24D1395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천안함 생존장병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교육비지원, 천안함재단 지원 등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17억 5,200만원(연평균 3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천안함재단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생활지원금	255	0	0	0	0	255	51
의료지원	7	6	6	6	6	32	6
교육비 지원	5	7	10	16	22	61	12
천안함재단 지원	266	273	281	288	296	1,404	281
합계	533	287	297	311	324	1,752	3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생활지원금)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지급방법 및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2	안 제7조(의료지원)	국가는 생존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과 그 외의 위탁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의무규정
3	안 제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9조(교육비 지원)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외국인학교 제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	재량규정

		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교육비 지원의 범위, 신청 및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5	안 제10조(취업지원)	국가는 생존장병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함	의무규정
6	안 제12조(천안함재단에의 출연 등)	국가는 생존장병 및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에 대하여 설립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생활지원금)	○	—
2	안 제7조(의료지원)	○	—
3	안 제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천안함 생존장병 및 유족은 대부분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유족, 제대군인)로서, 현재 국가보훈부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통해 지원가능하고, 현역장병의 경우, 군 내 정신건강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진료지원 중이므로 추가재정소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9조(교육비 지원)	○	—
5	안 제10조(취업지원)	×	생존장병 중 현역복무중인 22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해 취업지원할 경우, 국가보훈부의 취업지원대상 중 지원비율 10%를 고려하면 연간 약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하고, 취업지원단가 36만 5,917원(2023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안 제12조(천안함재단에의 출연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천안함 생존장병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추계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타 등급의 생활지원금의 평균 단가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 의료지원 수준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조건(진료비의 60% 지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수진횟수 및 진료단가에 최근 5년간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
- 교육비 지원은 생존장병의 평균연령이 40세인 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재학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추계에서 제외하고, 우리나라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가 2.9세인 점을 고려하여 37세인 여성의 각 년도 출산율을 적용하여 생존장병 30명의 학년별 자녀수를 추정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 동안의 기간을 추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2%	2.1%	2.1%	2.1%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천안함 피격 피해자 현황

- 천안함 피격 피해자는 총 105명이며, 이 중 47명이 전사하고 58명이 생존함
 - 전사자 47명은 모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어, 전몰군경의 유족은 동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보상금 지급, 의료·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받음
 - 생존 장병 58명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인원은 28명이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인원은 30명임

[표 2] 천안함 승선 장병 및 유족 현황(2024.6)

(단위: 명)

구 분	전사자	생존자						합 계
	국가 유공자법 대상자	전역자					현역복무 中	
		국가 유공자법 대상자	국가유공자법 비대상		심사 진행中	미신청		
			요건 비해당	등급 미달				
본인	47	28	1	1	3	3	22	105
유족	90	－	－	－	－	－	－	90

주: 천안함 승선장병은 104명이지만, 천안함 승선장병 구조 작업 중 순직자 1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 제정안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은 천안함 피격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²⁾과 전사자 유족임
 - 생존 장병 58명 중 안 제2조제2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동 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30명임
 - 전사자의 유족 90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심리상담 지원이 제공되므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심리

2)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존 장병”이란 천안함 피격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104명의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유족”이란 천안함 피격으로 인하여 전사한 46명의 장병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말한다.

상담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함

나. 생활지원금 지급(안 제6조)

- 제정안은 생존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제정안 제6조제3항은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안 제6조제1항에 따른 생존 장병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금액산정,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 제정안에 따라, 생존장병 및 유족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제외하면,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생존장병 30명임
- 제정안은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추계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생활지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사망·행불자는 7,000만원, 상이자는 장해1급부터 장해14급까지 5,000~3,000만원,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은 1,000만원(기타1급) 또는 700만원(기타2급)이 지급되었음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인원 30명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기타등급의 생활지원금 평균금액인 8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하면, 생활지원금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 생활지원금 추가재정소요: 2026~2030

(단위: 명,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원	30	0	0	0	0	30
생활지원금 단가	8.5	-	-	-	-	-
생활지원금	255	0	0	0	0	2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의료지원(안 제7조)

- 제정안은 생존장병 및 유족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과 그 외의 위탁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제정안에 따라, 생존장병 및 유족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제외하면, 의료지원의 지급대상은 생존장병 30명임
- 의료지원 수준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조건(진료비의 60% 지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수진횟수 및 진료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표 4]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횟수 및 지원단가 현황

(단위: 회,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보훈병원	수진횟수	0.6	0.6	0.6	0.6	0.6	0.0
	진료단가	53,864	62,974	64,394	66,795	67,249	5.7
위탁병원	수진횟수	12.1	10.1	8.4	8.3	8.7	-7.9
	진료단가	19,591	21,721	20,261	24,360	22,756	3.8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횟수 및 진료단가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진료횟수 및 진료단가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5]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횟수 및 지원단가 추정: 2026~2030

(단위: 회, 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보훈병원	수진횟수	0.6	0.6	0.6	0.6	0.6	0.0
	진료단가	79,428	83,960	88,750	93,814	99,166	5.7
위탁병원	수진횟수	6.8	6.3	5.8	5.3	4.9	-7.9
	진료단가	25,461	26,432	27,441	28,488	29,574	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정안에 따라 천안함 생존장병 30명에게 의료지원을 할 경우, 지원대상, 수진횟수, 진료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2030년까지 3,18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의료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훈병원	1.4	1.5	1.6	1.7	1.8	8.0
위탁병원	5.2	5.0	4.7	4.5	4.3	23.8
합계	6.6	6.5	6.3	6.2	6.1	31.8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교육비 지원(안 제9조)

- 제정안은 생존장병 및 유족이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평생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제정안에 따라, 생존장병 및 유족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제외하면, 교육비 지원의 지급대상은 생존장병 30명임
- 생존장병 본인의 경우, 평균연령이 40세로 중·고·대학교 재학가능성이 낮아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생존장병 자녀수 추정은 생존장병 평균연령이 2024년 기준 40세이며, 우리나라 평균 부부 연령차가 2.9세인 점을 고려, 배우자의 평균연령은 37세로 가정
- 2024년 37세인 여성의 각 연도별 출산율을 합산하여 생존장병 30명의 학년별 자녀수를 추정

[표 7] 생존장병 교육비 지원대상 추정: 2026~2030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중학생	5.6	7	8	8.5	8.6
고등학생	2.5	3.2	4.2	5.6	7.0
대학생	1.7	2.2	3	5.1	6.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교육비 지원단가는 중고등생에 대해서는 학습보조비(2024년 기준 중학생 124,000원, 고등학생 144,000원)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으며, 대학생에 대해서는 2023년 1인 연평균 수업료 2,214,000원에 일반 4년제 대학교 수업료 평균 상승률 4.1%를 적용

[표 8] 생존장병 교육비 지원단가 추정: 2026~2030

(단위: 천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중학생	130	132	135	138	141
고등학생	150	154	157	160	163
대학생	2,498	2,600	2,707	2,818	2,933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생존장병 30명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6,08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생존장병 교육비 지원 추가재정소요: 2026~2030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중학생	0.7	0.9	1.1	1.2	1.2	5.1
고등학생	0.4	0.5	0.7	0.9	1.1	3.6
대학생	4.2	5.7	8.1	14.4	19.6	52.1
합계	5.3	7.1	9.9	16.4	22.0	6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천안함 재단 출연(안 제12조)

- 제정안에 따라 천안함 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 발생
- 천안함재단 인력규모는 6명으로 가정하고, 인건비단가는 가장 최근 설립된 5·18민주유공자단체 인건비 단가에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
 - 현재 천안함재단 상근직원은 3명이지만, 최근 설립된 5·18민주유공자단체의 경우, 임원 3인을 포함하여 12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천안함재단 인건비 지원은 6명으로 가정함

[표 10] 천안함재단 지원인력 규모 및 인건비 단가: 2026~2030

(단위: 명,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인원	6	6	6	6	6	-
1인당 연간급여	21.9	22.6	23.3	24.1	24.8	-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천안함 재단의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7월)한 기관부담금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1] 천안함재단 인건비 등 추정: 2026~2030

(단위: 명,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인건비	131	135	140	144	149	700
기관부담금	15	15	16	17	17	81
합 계	146	151	156	161	166	780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인건비를 제외한 임차료, 기본경비 등은 2024년 천안함재단 재단운영유지비(연간 1억 1,40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하여 산정

[표 12] 천안함재단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인건비 등	146	151	156	161	166	780
기본경비	120	122	125	127	130	624
합계	266	273	281	288	296	1,404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바.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천안함 생존장병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교육비지원, 천안함재단 지원 등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17억 5,200만원(연평균 3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3] 천안함재단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생활지원금	255	0	0	0	0	255	51
의료지원	7	6	6	6	6	32	6
교육비 지원	5	7	10	16	22	61	12
천안함재단 지원	266	273	281	288	296	1,404	281
합계	533	287	297	311	324	1,752	3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천안함 승선장병 중 국가유공자 대상자가 아닌 30명에 대해 생활지원금, 의료, 교육비, 천안함재단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규모, 추후 국가유공자 대상자로 추가 등록되는 인원 수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